

부 산 고 등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5노60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
자강제추행)

피 고 인 정0성 (7*****-*****), **
주거 부산
등록기준지 김해시

항 소 인 검사

검 사

변 호 인

원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5. 8. 19. 선고 2024고합451 판결

판 결 선 고 2026. 5. 14.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어느 정도의 사리분별 및 의사소통이 가능한 수준으로 보이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중증 지적장애인이고 피해자 ○○○(여, **세)와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4. 8. 18. 13:28경 부산 **** * ***, *****(***)에서 친구들과 탁자에 앉아 음식을 먹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옆자리에 앉은 후 반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갑자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혹은 사정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은 1998. 3. 9.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았고, 2016. 4. 18.경부터 2025. 2. 25.경까지 00000의료원, 0000000병원, 000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기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외래진료를 받았으며, 이 사건 발생 전인 2022. 7. 11.부터 같은 달 20.까지, 2023. 1. 3.부터 같은 달 25.까지, 2024. 6. 14.부터 같은 달 21.까지는 00000의료원에서, 이 사건 발생 후인 2024. 8. 19.부터 같은 달 29.까지, 2024. 9. 5.부터 같은 달 13.까지는 00000000병원에서 각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아 왔다. 이처럼 피고인이 지적장애인인 성폭력 사건에서 범행의 고의를 부인함에 따라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만이 유죄의 증거가 되는 경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주장은 물론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 피해자 진술 내용의 합리성·타당성, 객관적 정황과 다양한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에 이르지 않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

② 피고인에 대한 심리평가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의 지능지수(IQ)는 66으로 ‘경도 지적장애’ 수준이고, 사회적응 수준은 만 7세 10개월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의 심리평가를 담당할 임상심리전문가는 ‘피고인은 주변 사람들에게 호의적인 관심을 보이며 먼저 다가가는 것을 좋아하고, (...) 자신의 언행에 대한 타인 반응의 결과를 예상하기 등은 어려우며, 상당히 미성숙한 방식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듯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③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추행 행위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옆자리에 앉은 후 반바지를 입고 있던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는 것으로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기습추행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전에 교회에서 몇 차례 본 적 있는 피해자를 ***에서 보게 되었고, ***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잘 지내나?”라고 인사를 건네면서 피해자의 허벅지에 잠깐 순간적으로 손을 올렸다는 것이다. 피고인의 지적능력과 사회적응능

력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행위는 주변 사람들에게 호의적인 관심을 보이고 먼저 다가가는 것을 좋아하며 자신의 행동에 대한 타인의 반응을 예상할 수 없는 피고인이 교회에서 몇 차례 본 적이 있는 피해자에 대한 반가움과 편면적인 친밀감에서 취한 행위로서 피고인의 미성숙한 사회적응능력 등 지적장애로 인한 이상 행동일 가능성이 높다.

④ 사건 당시 *** CCTV 영상에 따르면, 반바지를 입은 피해자를 포함한 여학생 4명이 *** 내부 테이블에서 컵라면 등을 먹기 위하여 앉아 있는 장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자리로 다가가 약 3~4분 정도 앉아 있는 장면, 피해자 일행이 갑자기 밖으로 뛰쳐나가는 장면 등이 확인될 뿐이고,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신체접촉 행위가 뚜렷하게 확인되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올렸다가 바로 떴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만졌다.”고만 진술하였을 뿐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목격자가 다수 있는 공개된 ***에서 어린 아이에 대한 추행을 감행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일반적으로 흔한 일이 아닌바, 지적장애가 있는 피고인으로서 피해자에게 성적 불쾌감을 일으킬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크고, 오로지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아 추행의 고의를 선불리 추단할 것은 아니다.

⑤ 결국, 피고인이 지적장애로 인하여 추행의 고의 없이 친근감과 반가움의 양상으로 별다른 의미 없이 손을 피해자의 허벅지에 순간적으로 접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바, 피해자 진술만으로 추행의 고의를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할 수 없다.

다. 당심의 판단

1) 관련법리

가)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5093 판결 등 참조).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위반죄(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추행을 한다는 인식을 전제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므로,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따를 수밖에 없다. 이 경우 피고인의 나이·지능·지적능력 및 판단능력, 직업 및 경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구체적 행위 태양 및 행위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평소 행동양태·습관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하고, 피고인이 고의로 추행을 하였다고 볼 만한 징표와 어긋나는 사실의 의문점이 해소되어야 한다. 이는 피고인이 자폐성 장애인이거나 지적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외관상 드러난 피고인의 언행이 비장애인의 관점에서 이례적이라거나 합리적이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함부로 고의를 추단하거나 이를 뒷받침하는 간접사실로 평가해서는 안 되고, 전문가의 진단이나 감정 등을 통해 피고인의 장애 정도, 지적·판단능력 및 행동양식 등을 구체적으로 심리한 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 당시 특정 범행의 구성요건 해당 여부에 관한 인식을 전제로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까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

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3081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강제추행죄에서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추행의 범의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죄의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도4447 판결 등 참조).

2)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강조하는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이와 같은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어느 정도 조사가 가능하였고, 법정에서 재판장의 질문에 답변을 하기도 하였으나, 심리학적 평가보고서상 피고인의 사회적 적응수준은 지적능력에 비하여서도 저조한 편으로, 만 7세 10개월 수준에 불과하다고 평가되므로, 피고인이 일상적 대화의 수준을 넘어서서 추행, 성폭행, 성적 도덕관념을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맥락에서 피고인은 특정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거나 미루어 짐작하는 능력이 결여되어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올리며 인사하는 행위가 성적 불쾌감을 일으킬 수 있음을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따

라서 외관상 드러난 피고인의 위 행위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 유발을 예견하고도 이를 용인하며 위와 같은 행위로 나아갔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단지 비장애인의 관점에서 이례적이거나 합리적이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함부로 고의를 추단할 수 없다.

② 수사기관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올린 이후 피해자가 보인 반응에 대해 묻자, 피고인은 ‘라면을 먹고 있어서 몰랐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피고인이 경찰수사 당시 자신의 행위 자체는 모두 시인하였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위와 같은 진술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변명이라기보다 실제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에 따른 피해자의 반응을 전혀 예상하거나 인식하지 못한 결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언행에 대한 타인의 반응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심리평가 결과와도 일치한다.

③ 피고인은 잠깐의 순간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올린 행위 외에 피해자의 다른 신체 부위에 접촉하거나 접촉을 시도한 사실이 없으며, 위 행위 전후로 추행의 고의를 추단할 피고인의 언동도 확인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허벅지 또는 다리를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긴 하였으나, ‘만졌다’는 표현이 지칭하는 행위의 태양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고, ‘손을 올렸다가 바로 뺐다’는 피고인의 진술 외에 위 행위의 구체적인 양상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④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세의 남성으로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소아성기호증 등 피고인의 성적 의도를 추측해볼만한 자료도 없다.

⑤ 위와 같이 피고인 측에서 제출한 증거 등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황이 인정됨에 반해 피고인의 성적 관심의 존부 및 정도, 성적 관련성에 대한 지적 능력, 성적 도덕관념에 대한 이해의 정도, 이 사건 발생 전후 피고인의 언행, 피해자의

두려움 및 불쾌감에 대한 인식여부 그 밖에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추단할만한 객관적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_____
	판사	_____
	판사	_____